

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1. 폐지이유

-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(대통령령 제15903호, 1998.10.1)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(총리령 제386호, 1999.7.5)이 2003. 6. 23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함.

2. 주요골자

-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

3. 검토의견

이번에 상정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국민의 정부에서는 부정부패·비능률·정경유착·관치금융·이기주의·지역감정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각종 적폐를 청산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, 세계 일류국가 건설하기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①부정부패 추방운동 ②국민화합운동 ③신지식인운동 ④한마음공동체 운동 ⑤21세기 문화시민운동 등 5대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중점과제로 선정·추진하였으며, 지방정부에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,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·운영한 바 있습니다.

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(다만 앞서 말한 5대 의식생활개혁운동 중 신지식인운동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음).

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